|  |  |  |
| --- | --- | --- |
| **1.2.35 외상투자 임대업 관리방법**(상무부 령 2005년 제5호, 2015년 10월 28일 <상무부의 일부 규장 및 규범성 문건 개정에 대한 결정>에 따라 개정)　　　　　　 제1조 외상투자 임대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외상투자 임대업의 경영행위를 규범화하며 경영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등의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외국회사,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이하 외국투자자라 약칭함)이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중외합자, 중외합작 및 외상독자의 형식으로 임대업무, 융자임대 업무에 종사하는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여 경영활동 종사시,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외상투자 임대업은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의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임대 업무에 종사하는 외상투자 기업은 외상투자 임대회사이며, 융자임대 업무에 종사하는 외상투자 기업은 외상투자 융자임대회사이다. 제4조 외상투자임대회사 및 외상투자 융자임대회사는 마땅히 중화인민공화국의 관련 법률, 법규 및 규장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그 정당한 경영활동 및 합법적인 권익은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상무부는 외상투자 임대업의 업종주관 부서와 심사허가 관리기관이다. 　 제5조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임대업무란 임대인이 임대재산을 임차인에게 교부하여 사용, 수익하도록 하고 아울러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수취하는 업무를 말한다.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융자임대 업무란 임차인이 선택한 매도인, 임대물에 근거하여 임대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임재재산을 구입하여 임차인에게 제공, 사용하도록 하고 아울러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수취하는 업무를 말한다. 　 외상투자 융자임대회사는 직접임대, 전임대, 回임대、杠杆임대, 위탁임대, 연합임대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융자임대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제6조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임대재산은 하기 재산을 포함한다.　　 (1) 생산설비, 통신설비, 의료설비, 과학연구설비, 검사검측 설비, 공사기계설비, 사무 설비 등의 각종 동산　 (2) 항공기, 자동차, 선박 등의 각종 교통수단 (3) 본조 (1), (2)항에서 지칭하는 동산과 교통도구 부대의 소프트, 기술 등의 무형자산, 단 부대 무형자산의 가치가 임대재산 가치의 1/2를 초과할 수 없다. 　 제7조 외상투자임대회사와 외상투자 융자임대회사의 외국투자자의 총자산은 500만 달러 미만이어서는 안된다. 　　 제8조 외상투자임대회사는 마땅히 하기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등록자본금이 '회사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　　 (2) 외상투자기업 등록자본금과 투자액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　　 (3) 유한책임회사 형식의 외상투자 융자임대회사의 경영 기한은 일반적으로 30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9조 외상투자 융자임대회사는 마땅히 하기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유한책임회사 형식의 외상투자 융자임대회사의 경영기한은 일반적으로 30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2) 필요한 전문요원이 있고 고급관리요원은 마땅히 필요한 전문자격과 최소한 3년의 종업경력을 소지해야 한다. 　　 제10조 외상투자 임대회사와 외상투자 융자임대회사의 설립은 마땅히 심사 허가 기관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2) 투자 각 방이 서명 날인한 타당성 연구 보고서　　 (3) 계약, 정관(외자기업은 정관만 제출)　　 (4) 투자 각 방의 은행신용증명, 등록자본금증명(복사본), 법인대표 신분증명(복사본) 　　 (5) 회계사 사무소의 회계 심사를 거친 투자 각 방의 최근 1년간의 회계심사 보고서　　 (6) 이사회 구성원 명단 및 투자 각 방의 이사 위임장　　 (7) 고급 관리요원의 경력증명　 (8) 공상행정 관리기관이 제출한 기업명칭 사전허가통지서　　 주식유한회사의 설립을 신청할 경우에는 또한 관련 규정이 요하는 기타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외상투자임대회사와 외상투자 융자임대회사의 설립은 마땅히 하기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유한책임회사 형식의 외상투자임대회사는 마땅히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 소재지 성급 상무주관 기관에 본 방법 제10조 규정의 전부의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성급 상무주관 기관은 전부의 신청 서류 접수일로부터 45일 근무일내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설립을 비준할 경우, '외상투자기업 허가증명'을 발급하고, 비준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땅히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성급 상무주관 기관은 마땅히 외상투자 임대회사의 설립을 비준한 후 7일 근무일내 비준 서류를 상무부에 보고하여 비치해야 한다. 주식유한회사 형식의 외상투자 임대회사의 설립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외상투자 융자임대회사 설립은 마땅히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소재지 성급 상무주관 기관에 본 방법 제10조 규정의 전부의 서류를 제출하고, 성급 상무주관 기관은 접수한 신청서류에 대한 초심후, 전부의 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15일 근무일내 신청서류와 초심의견을 상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상무부는 전부의 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45일 근무일내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설립을 비준할 경우, '외상투자기업 허가증명'을 발급하고, 비준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땅히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3) 이미 설립된 외상투자 기업이 임대업무의 종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마땅히 본 방법 규정의 조건에 부합해야하며 아울러 본조 제(1)항 규정의 절차에 따라 법에 의해 상응한 경영범위를 변경해야 한다. 제12조 외상투자임대회사와 외상투자 융자임대회사는 마땅히 '외상투자기업 허가증명' 수령일로부터 30일 근무일내 공상행정 관리기관에서 등기등록 수속을 해야 한다. 　제13조 외상투자임대회사는 하기 업무를 경영할 수 있다. 　　 (1) 임대업무　　 (2) 국내외로부터의 임대재산의 구매 　 (3) 임대재산의 잔여가치 처리 및 보수　　 (4) 심사허가 기관의 비준을 받은 기타의 업무　　 제14조 외상투자 융자임대회사는 하기 업무를 경영할 수 있다. 　　 (1) 융자 임대 업무　　 (2) 임대 업무　　 (3) 국내외로부터의 임대재산 구매 　 (4) 임대 재산의 잔여가치 처리 및 보수　　 (5) 임대 교역 자문과 담보　　 (6) 심사허가 기관의 비준을 받은 기타의 업무　　 제15조 외상투자 융자임대회사가 임차인의 선택에 근거하여 수입하는 임대 재산이 쿼터, 허가증 등의 전문 정책관리 재산인 경우, 임차인 또는 융자임대 회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거기에 따르는 수속을 해야 한다. 　　 외상투자임대회사가 수입하는 임대 재산은 마땅히 현행 외상투자 기업 수입설비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16조 리스크를 방지하고 경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상투자 융자임대회사의 리스크 자산은 일반적으로 정미자산 가치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다. 리스크 자산은 기업의 총자산에서 현금, 은행예금, 국채와 위탁 임대 자산을 공제하고 난 후의 총 잉여 자산액에 따라 확정한다. 　 제17조 외상투자 융자임대회사는 마땅히 매년 3월 31일 전까지 상무부에 전년도 업무 경영 상황보고서와 회계사 사무소의 회계 심사를 거친 전년도 재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8조 중국 외상투자기업 협회 임대업 위원회는 외상투자 임대업에 대한 동업자율관리를 실시 하는 업종조직이다. 외상투자 임대회사와 외상투자 융자임대회사의 동 위원회 가입을 권장한다. 　　제19조 외상투자임대회사 및 외상투자 융자임대회사가 중국법률, 법규와 규장을 위반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0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의 회사, 기업과 기타의 경제조직이 내지에서 외상투자임대회사와 외상투자 융자임대회사 설립시에는 본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21조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성급 상무주관 기관이란 각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및 신강생산건설병단의 상무주관 기관을 말한다. 제22조 본 방법은 상무부에서 해석을 책임진다.　　 제23조 본 방법은 2005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원 외경무부 2001년 제3호령 '외상투자임대회사 심사비준 관리 잠정방법'은 동시에 폐지된다. |  | **外商投资租赁业管理办法**（商务部令2005年第5号，根据2015年10月28日《商务部关于修改部分规章和规范性文件的决定》修正）　　第一条 为促进外商投资租赁业的健康发展，规范外商投资租赁业的经营行为，防范经营风险，根据《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等有关法律、法规，制定本办法。　　第二条 外国公司、企业和其他经济组织（以下简称外国投资者）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以中外合资、中外合作以及外商独资的形式设立从事租赁业务、融资租赁业务的外商投资企业，开展经营活动，适用本办法。　　第三条 外商投资租赁业可以采取有限责任公司或股份有限公司的形式。　　从事租赁业务的外商投资企业为外商投资租赁公司；从事融资租赁业务的外商投资企业为外商投资融资租赁公司。　　第四条 外商投资租赁公司及外商投资融资租赁公司应遵守中华人民共和国有关法律、法规及规章的规定，其正当经营活动及合法权益受中国法律保护。　　商务部是外商投资租赁业的行业主管部门和审批管理部门。第五条 本办法所称租赁业务系指出租人将租赁财产交付承租人使用、收益，并向承租人收取租金的业务。　　本办法所称融资租赁业务系指出租人根据承租人对出卖人、租赁物的选择，向出卖人购买租赁财产，提供给承租人使用，并向承租人收取租金的业务。　　外商投资融资租赁公司可以采取直接租赁、转租赁、回租赁、杠杆租赁、委托租赁、联合租赁等不同形式开展融资租赁业务。第六条 本办法所称租赁财产包括：　　（一）生产设备、通信设备、医疗设备、科研设备、检验检测设备、工程机械设备、办公设备等各类动产；　　（二）飞机、汽车、船舶等各类交通工具；　　（三）本条（一）、（二）项所述动产和交通工具附带的软件、技术等无形资产，但附带的无形资产价值不得超过租赁财产价值的二分之一。　　第七条 外商投资租赁公司和外商投资融资租赁公司的外国投资者的总资产不得低于500万美元。　　第八条 外商投资租赁公司应当符合下列条件：　　（一）注册资本符合《公司法》的有关规定；　　（二）符合外商投资企业注册资本和投资总额的有关规定；　　（三）有限责任公司形式的外商投资租赁公司的经营期限一般不超过30年。　　第九条 外商投资融资租赁公司应当符合下列条件：　　（一）有限责任公司形式的外商投资融资租赁公司的经营期限一般不超过30年。　　（二）拥有相应的专业人员，高级管理人员应具有相应专业资质和不少于三年的从业经验。　　第十条 设立外商投资租赁公司和外商投资融资租赁公司应向审批部门报送下列材料：　　（一）申请书；　　（二）投资各方签署的可行性研究报告；　　（三）合同、章程（外资企业只报送章程）；　　（四）投资各方的银行资信证明、注册登记证明（复印件）、法定代表人身份证明（复印件）；　　（五）投资各方经会计师事务所审计的最近一年的审计报告；　　（六）董事会成员名单及投资各方董事委派书；　　（七）高级管理人员的资历证明；　　（八）工商行政管理部门出具的企业名称预先核准通知书；　　申请成立股份有限公司的，还应提交有关规定要求提交的其他材料。　　第十一条 设立外商投资租赁公司和外商投资融资租赁公司，应按照以下程序办理：　　（一）设立有限责任公司形式的外商投资租赁公司，应由投资者向拟设立企业所在地的省级商务主管部门报送本办法第十条规定的全部材料，省级商务主管部门应自收到全部申请材料之日起45个工作日内做出是否批准的决定，批准设立的，颁发《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不予批准的，应书面说明原因。省级商务主管部门应当在批准外商投资租赁公司设立后7个工作日内将批准文件报送商务部备案。股份有限公司形式的外商投资租赁公司的设立按照有关规定办理。　　（二）设立外商投资融资租赁公司，应由投资者向拟设立企业所在地的省级商务主管部门报送本办法第十条规定的全部材料，省级商务主管部门对报送的申请文件进行初审后，自收到全部申请文件之日起15个工作日内将申请文件和初审意见上报商务部。商务部应自收到全部申请文件之日起45个工作日内做出是否批准的决定，批准设立的，颁发《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不予批准的，应书面说明原因。（三）已设立的外商投资企业申请从事租赁业务的，应当符合本办法规定的条件，并按照本条第（一）项规定的程序，依法变更相应的经营范围。　　第十二条 外商投资租赁公司和外商投资融资租赁公司应当在收到《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之日起30个工作日内到工商行政管理部门办理登记注册手续。　　第十三条 外商投资租赁公司可以经营下列业务：　　（一）租赁业务；　　（二）向国内外购买租赁财产；　　（三）租赁财产的残值处理及维修；　　（四）经审批部门批准的其他业务。　　第十四条 外商投资融资租赁公司可以经营下列业务：　　（一）融资租赁业务；　　（二）租赁业务；　　（三）向国内外购买租赁财产；　　（四）租赁财产的残值处理及维修；　　（五）租赁交易咨询和担保；　　（六）经审批部门批准的其他业务。　　第十五条 外商投资融资租赁公司根据承租人的选择，进口租赁财产涉及配额、许可证等专项政策管理的，应由承租人或融资租赁公司按有关规定办理申领手续。　　外商投资租赁公司进口租赁财产，应按现行外商投资企业进口设备的有关规定办理。　　第十六条 为防范风险，保障经营安全，外商投资融资租赁公司的风险资产一般不得超过净资产总额的10倍。风险资产按企业的总资产减去现金、银行存款、国债和委托租赁资产后的剩余资产总额确定。　　第十七条 外商投资融资租赁公司应在每年3月31日之前向商务部报送上一年业务经营情况报告和上一年经会计师事务所审计的财务报告。　　第十八条 中国外商投资企业协会租赁业委员会是对外商投资租赁业实行同业自律管理的行业性组织。鼓励外商投资租赁公司和外商投资融资租赁公司加入该委员会。　　第十九条 外商投资租赁公司及外商投资融资租赁公司如有违反中国法律、法规和规章的行为，按照有关规定处理。　　第二十条 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台湾地区的公司、企业和其他经济组织在内地设立外商投资租赁公司和外商投资融资租赁公司，参照本办法执行。　　第二十一条 本办法中所称省级商务主管部门是指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及新疆生产建设兵团商务主管部门。　　第二十二条 本办法由商务部负责解释。　　第二十三条 本办法自二○○五年三月五日起施行。原外经贸部2001年第3号令《外商投资租赁公司审批管理暂行办法》同时废止。　　 　　 |